

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

제출년월일 : 1992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정 이 유

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2. 설 치 근 거

-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(조례제정근거)
- 지방자치법 제117조(회계의 구분)
- 지방재정법 제 5 조(회계의 구분)

3. 주 요 내 용

- 세 입(제 3 조)
 -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수익금
 - 국·시비 보조금
 -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
 - 용자금 상환원리금,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
 - 타회계 전입금
 - 기타 수입금
- 세 출(제 4 조)
 - 공공시설정비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
 - 주택건립, 개량용자금
 -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
 - 기타 차입금 상환
 - 공법인에 대한 출자
 -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운영등에 필요한 제경비

4. 제정조례(안) : 별지 1